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389-10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389-10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발간에 즈음하여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6시그마경영 및 지식경영의 혁신기법을 도입하였고, 또한 고객의 최접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관련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였으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수수료의 체계 개선과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허고객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제도를 손쉽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허·상표의 손쉬운 이용」을 보완하여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으로 수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의 간단한 설명과 정보검색, 출원 및 등록, 수수료, 특허분쟁시 참고사항 및 특허고객을 위하여 특허청이 하는 일 등을 다수 소개 함으로써, 특허고객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특허청에 절차를 밟는 특허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21세기 지식재산강국 실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 8.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영근

특허서비스현장

우리 특허청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지식재산도 소중히 대할 것이며,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 함과 동시에 등록된 권리는 안정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상시혁신체제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1.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내·외의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고객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밝혀 직원 모두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알리며, 일 잘하는 특허청,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1.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편에서
2.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3.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4.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5.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6.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7. 특허정보는 국가의 자산, 편리하게 이용토록
8. 양질의 서비스는 특허가족의 협조도 한몫



목 차

»»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I . 산업재산권의 간단한 설명	03
II . 기술개발 및 출원전 산업재산권 정보검색	05
III . 출원 및 등록 방법	10
IV . 해외출원 방법	37
V . 수수료	46
VI . 특허분쟁시 참고사항	58
VII .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하여 하는 일	62
VIII . 특허청 및 유관기관 소개	77



I . 산업재산권의 간단한 설명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 재산권임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 등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2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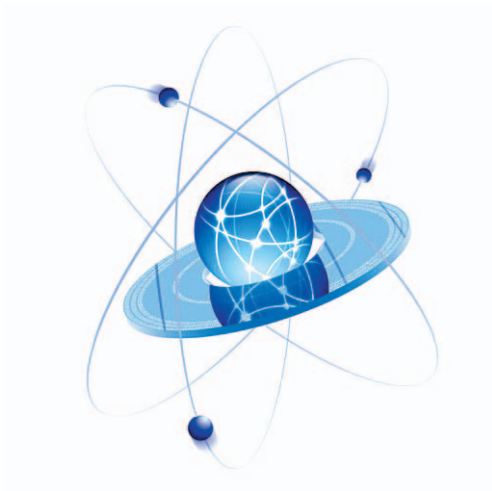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 시제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①

3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 분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상 표
정 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 (소발명)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 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를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마크 등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II . 기술개발 및 출원전 산업재산권 정보검색

1 산업재산권 정보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자료
-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
 -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동향), 권리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제공처

■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 주요국가의 특허정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특허고객 등에게 열람, 복사, 검색서비스 제공
-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인터넷 정보, 영문특허초록(KPA)은 물론 주요국가로부터 수집한 전자매체 형태(CD-ROM, Microfilm, Microfiche)의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를 비치하여 특허고객이 폭넓은 정보 검색 가능
- 연락처 : ☎ (042-481-5124), FAX (042-472-3462)

■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 연락처 : ☎ (02-568-6221), FAX (02-557-8414)



II

■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2007. 7. 현재)

연 번	기 관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2)3459-2821~7
부산광역시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4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624~7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053)755-0041~6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8~9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032)512-8023
광주광역시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3
대전광역시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042)864-4502~3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83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경기테크노파크(안산)	031)500-3030
	포천 대진대학교	031)539-1277
강 원 도	부천산업진흥재단	032)621-2082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춘천)	033)258-6580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1~3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원주)	033)749-3310
충 청 북 도	태백상공회의소	033)552-5555
	청주상공회의소	043)254-4281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1~5
충 청 남 도	충북 영동대학교	043)740-1122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천안)	041)556-7131~5
경 상 북 도	서산상공회의소	041)663-0041
	안동상공회의소	054)859-3090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경 상 남 도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마산상공회의소	055)241-4131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1
전 라 북 도	창원상공회의소	055)283-0608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6
전 라 남 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2
제 주 도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6

■ 서비스 내용

- 특허정보서비스의 제공
- 지식재산권에 관한 종합적인 특허고객 상담
 - 출원절차, 등록절차 등
 - 전자출원, 정보검색 요령 등
 -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제공

■ 이용시간

- 09:00~18:00(월요일~금요일)

■ 인터넷을 통한 공보발간 (2001. 7월 이후)

- 특허청 홈페이지 → 자료실 → 인터넷 공보

3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이용방법

■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한 자료복사 신청

-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서울사무소 열람실
 - 전자도서관 : (042) 481-5124
 - 서울사무소 : (02) 568-6221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
 - 전화 번호는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참조
- 우편 신청
 - 특허청 특허전자 도서관 : 우)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4~5층



II

■ Internet 이용 특허정보검색

- 국내 무료검색 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KIPI)
e www.kipris.or.kr

- 국외 무료검색 사이트
 - 유럽특허청(EPO)
e ep.espacenet.com
 - 일본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전자도서관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e www.ipdl.inpit.go.jp
 - 미국특허청이 운영하는 검색사이트(USPTO)
e www.uspto.gov/patft/index.html
 - 러시아특허청특허검색
e www.fips.ru/ensite
 - SOFTWARE 관련 발명의 특허정보검색
e www.spi.org/cgi-bin/newqry
 - Trilateral Web Site(유럽, 일본, 미국이 만든 사이트)
e www.european-patent-office.org
 - 캘리포니아(California)대학 특허검색
e scilib.ucsd.edu
 - 유럽특허청 심판검색
e www.european-patent-office.org
 - 유럽특허정보검색
e www.epoline.org

- 국내 유료검색 사이트
 - WIPS 특허검색
e www.wips.c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 www.kisti.re.kr

- 국외 유료검색 사이트
 - Delphion
 e www.delphion.com
 - Patolis
 e www.patolis.co.jp
 - QPAT
 e www.qpat.com
 - STO
 e www.bustpatents.com
 - MICROPATENT
 e www.micropatent.co.kr
 - DERWENT
 e www.derwent.co.uk
 - Dialog Web
 e www.dialogweb.com

4 한국특허정보원(KIPI)의 서비스 제공 범위

구분	수 록 항 목	수 록 형 태	수 록 기 간	비 고	
국	특·실	서지, 행정정보, 초록(청구범위)	TEXT	'48~	공고(공개)일 기준
		공보전문	TIFF, SGML	'83~	
	디자인	서지, 행정정보	TEXT	'50~	등록일 기준
		공보전문	TIFF, SGML	'86~	
내	상 표	서지, 행정정보, 상표구성	TEXT, TIFF	'50~	출원일 기준
	심 판	서지, 행정정보, 심결문전문	TEXT, HTML	'56~	청구일 기준
	KPA	한국특허영문초록	SGML	'79~	공고(공개)일 기준
	생명공학	염기/아미노산 서열 포함 특허	TEXT	'80~	출원일 기준
해 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TEXT, TIFF	'80~	등록일 기준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TEXT, TIFF	'80~	공개일 기준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TEXT, TIFF	'80~	공개일 기준



Ⅲ. 출원 및 등록 방법

1 산업재산권 정보

■ 출원인(대리인)등록 (특허법 제28조의 2,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 코드 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 출원인 코드 신청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①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②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명칭과 법인등록번호
- ③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 ④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⑤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⑥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전자문서 이용신고 (특허법 제28조의 4,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3)

- 전자출원(온라인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령하여 전자출원 실행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함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



2 출원시 공통사항

■ 출원인 적격 (자연인 및 법인)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 재외자의 출원 (특허법 제5조)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

■ 출원방법

● 전자출원

- 온라인 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 kipo.go.kr 특허路 온라인출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FD 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kipo.go.kr 특허路 온라인출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서면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kipo.go.kr QUICK MENU 민원서식



■ 구비서류

구분	권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전자문서출원	ON-LINE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1. 출원서 : 1통 2. 도면 (또는 사진, 견본을 제출할 경우 견본, 사진을 첨부) : 1통	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가로 세로 각각 8cm 이내) 3.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 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FD	FD 1장과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시)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등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 내 위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Down* 가능

* kipo.go.kr QUICK MENU 민원서식

■ 제출처

- ON-LINE 출원
 - 특허청 홈페이지 : kipo.go.kr → 특허路(온라인 출원서비스)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평일 ·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 공휴일	09:00 ~ 21:00



- 방문접수
 - 장 소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토요일 09:00~13:00)
- 우편접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단, PCT국제출원은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 출원서 작성 유의사항

- 도면
 - 발명이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 도면 미 첨부시에는 반려의 대상이 되어 반려처리 됨
-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출원
 -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에 첨부
 -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

3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제출서류가 출원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함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하면 됨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와 방문출원일 경우에는 즉시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가 일괄 변경됨
* [e kipo.go.kr](http://e.kipo.go.kr) ▶ QUICK MENU ▶ 민원서식

■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 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 번호가 부여됨
-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효과 발생

■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5)

-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 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온라인제출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는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됨)

■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許與)할 것인가 판단
 - 선출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허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진정한 발명자에게 허여(미국)
- 선출원의 종류
 - ① 본래의 선출원(특허법 제36조)
 - 시기적 기준(日기준)
 - 이일(異日)출원 : 먼저 출원한 자
 - 동일(同日)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실체적 기준
 - 발명의 동일성(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청구범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특허 및 실용신안)
- ② 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
 - 시기적 기준(日기준)
 -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실체적 기준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이 되고, 후출원인 당해 특허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
 - 주체의 동일성
 - 선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요 건
 - 당해출원이 타출원보다 후출원일 것
 - 타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당해 출원후 일것

■ 신규성

- 신규성의 의의
 - 발명(디자인)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것
 -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적 : 특허(디자인)출원시(시·분·초)
 -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국내주의 : 2006. 9. 30. 이전 출원분)
 -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지 : 국제주의
- 신규성 상실사유
 -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

-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 ② 고등교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등 예외)

-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대 상

- 2006. 3. 3. 이후 출원 : 공지 대상요건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로 확대
- 2006. 3. 2. 이전 출원 : 발명의 시험, 간행물예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 요 건

-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예외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발생, 따라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특허속지주의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 직접 출원하는 방법 : 산업재산권 4권 모두
 -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상표



■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 15조)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실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제18조)

- 대 상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음
- 효 과 : 분할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 기 간 :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간 :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2006. 10. 1출원분부터), 디자인보호법 제20조(2005. 6. 30 이전 출원에 한함), 상표법 제19조]

- 대 상 :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
- 효 과 :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 기 간 : 변경출원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 이중출원 (구특허법 제53조, 구실용신안법 제17조)

- 이중출원제도 :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 7.1~2006. 9. 30 인 경우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이중출원 가능기간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선택후 나머지 권리는 포기해야 됨)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 출원보정

- 보정서 종류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 자진보정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 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등 보정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2005. 7. 1 이후)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등 보정과 출원서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야 함
 -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 (2001.6.30.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청구와 동시에 -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특허 (2001.7.1. 이후) · 실용신안 (2006.10.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전(자진보정기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보정 가능 (신규사항 추가금지)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에는 심판 청구일 부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을 것 -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결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원공고 결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청구제도

- 의 의 :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 10. 1 출원부터)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심사청구인 및 기간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 심사청구기간

특 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디자인·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청구시 취하간주
 - 심사청구는 취하불가
 -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 심사처리기간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통지까지 평균 10개월 정도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7~8월, 무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약 3월정도
상 표	출원일로부터 7 ~ 8월

■ 출원공개제도

- 의 의 :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 출원공개 시기

- 출원된 발명과 고안(2006. 10. 1 출원부터)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에 공개함(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 디자인·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음 (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개의 효과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 출원인은 출원공개(PCT 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보상금청구권발생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
 -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민법 제766조 규정 준용)

※ 정보의 제공

-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당해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디자인·상표는 공개·공고 불문하고 정보제공가능. 특허·실용신안은 2006. 10. 1 부터 적용)

※ 상표법(2001. 7. 1 시행)의 손실보상청구권

-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출원공고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의 의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제도는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법 제55조 제1항)
 -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
- 국내우선권 주장의 선출원 및 우선권주장의 취하 (특허법 제56조)
 -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때 취하 간주됨
 -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 불가
-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 :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임(외국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자는 국내에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디자인·상표를 외국에 출원한자는 6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음)



■ 우선심사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 의 의 :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 우선심사 신청대상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등록출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고안을 무단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것에 한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국·공립학교에 설치된 전담조직의 출원 포함),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 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중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원,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등
-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 매건당 167,000원(실용신안은 86,000원)
 -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26,000원(실용신안은 17,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반환
 - 디자인등록출원은 매건당 70,000원
- 우선심사 처리기간
 - 우선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

■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까지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 특허·실용신안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이상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는 일괄하여 2회이상 지정기간연장 가능)



- 실용신안 기술평가(1999. 7. 1.~2006. 9. 30. 출원하여 선등록된 건)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정정청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 상표·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이용발명

- 의 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 과 :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음. 단,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 보호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 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 가능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거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기술은 보호 불가능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 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 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 개념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 모델로 구성
 - 비즈니스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 (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 등)
 - 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 출원 및 작성
 - 일반특허출원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 출원, 다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
 - 명세서 검색 웹 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미국특허청 www.uspto.gov
 - 유럽특허청 ep.espacenet.com
 - 일본특허청 www.jpo.go.jp
 - IBM www.patents.ibm.com
- ※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 보호대상
 - 유전공학관련 발명 :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등
 - 미생물관련 발명 :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방선균, 동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균 등
 - 식물관련 발명 : 형질전환된 식물 등(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으로도 보호)
 - 동물관련 발명 : 동물자체, 동물의 일부분 (단, 인간에 대한 발명은 특허 불가)
- 미생물 기탁제도
 -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



※ 국내 기탁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종균협회부설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

- 동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물수정란을 기탁하여야 함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 의무화 제도

- 유전자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이들의 서열목록을 컴퓨터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1999. 1. 시행)

- 작성대상 : 4개 이상의 직쇄모양 아미노산 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모양 핵산염기 서열

- 작성방법 :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2007-5호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

※ 특허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서열 목록 작성용 프로그램 (KOPatentIn)사용 권장

■ 2007. 7. 1. 부터 시행된 제도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참조)

-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음. 다만 일정한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특허법 제42조 제3항 개정 참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특허법 제42조 제6항 신설 참조)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단축가능(특허법 제15조 제2항 개정 참조)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간의 단축이 가능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참조)

-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4 각 권리별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 특허, 실용신안 (2006. 10. 1 이후 출원)

●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인가?	→	×
	○ ↓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
	○ ↓	
3. 새로운 발명인가?	→	×
	○ ↓	
4.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
	○ ↓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	×
	○ ↓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
	○ ↓	
7. 다른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
	○ ↓	

거절 결정

특허(등록) 결정

※ 특허(등록)결정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 심사절차

-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처분 함
- 출원공개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정보제출 :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계속 중이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고안)이 특허(등록결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2006. 10. 1 정보제공건부터 적용)

- 실제심사

- 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단, 심사관은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 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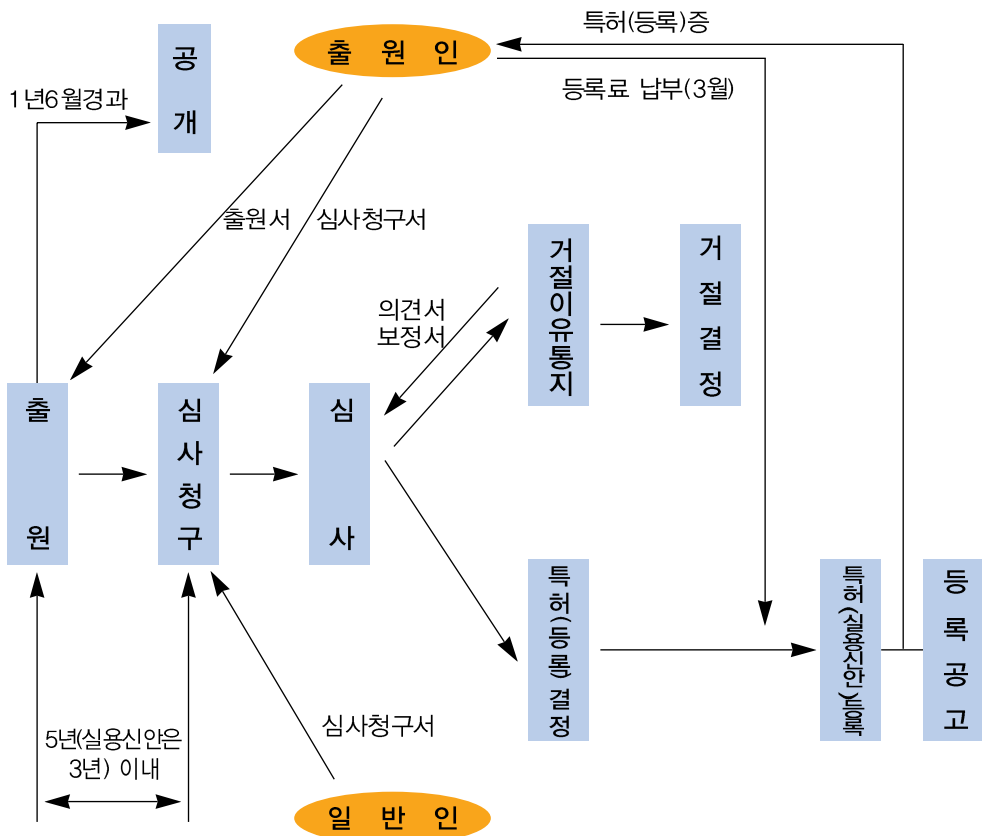
- 등록공고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 무효심판

-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 가능
- 등록공고일후 3월 경과후에는 이해관계인만 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심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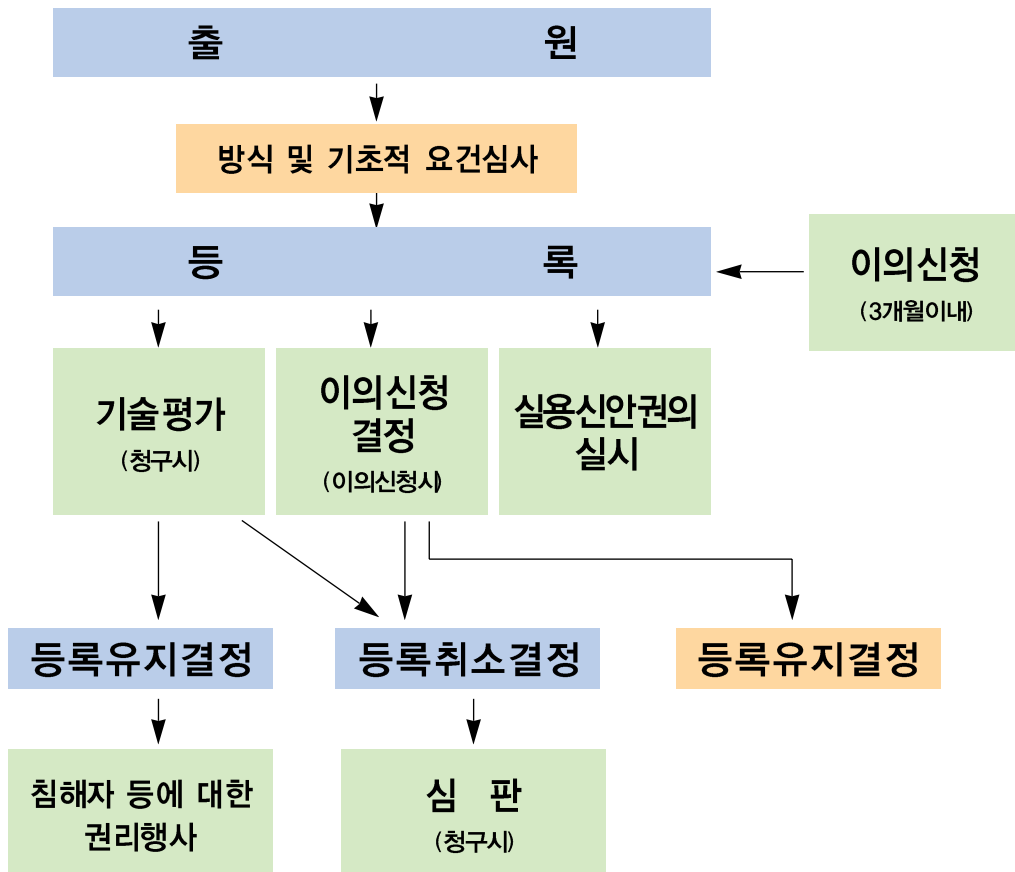
■ 실용신안 (출원일이 1999. 7. 1~2006. 9. 30인 경우)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 공고를 하는 제도
 -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는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 실제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 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 심사절차
 - 방식심사 :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료한지 등을 심사
- 등록 및 등록공고
 - 특허청장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 이의신청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정보제공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기술평가제도
 -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청구가능(등록전에는 불가)
 - 기술평가는 명세서의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 기술평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등록(예고등록) 후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게재
 -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함(청구항별로 가능)
 - 취소결정을 하기전에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기술평가 의견제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또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심판청구 가능(취소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보정 및 분할제한
 - 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출원후 2개월 이내 및 기초적 요건 위반으로 심사관의 보정 명령에 의한 보정서 제출기간내에서 가능
- 정정청구서 제출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대하여 심사관이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은 1회 1월에 한함
- 실용신안 선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 디자인

● 심사절차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음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를 함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 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한 벌물품디자인제도

2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차세트, 한 벌의 낱연 용구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

-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벽지·합성수지 등과 같이 Life cycle이 짧거나 등록료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출원비용도 경감해 주는 제도

- 부분디자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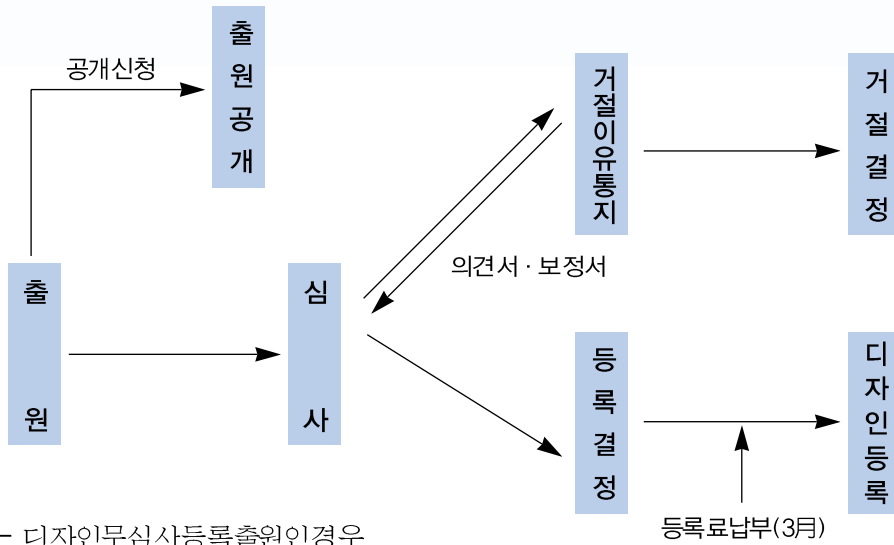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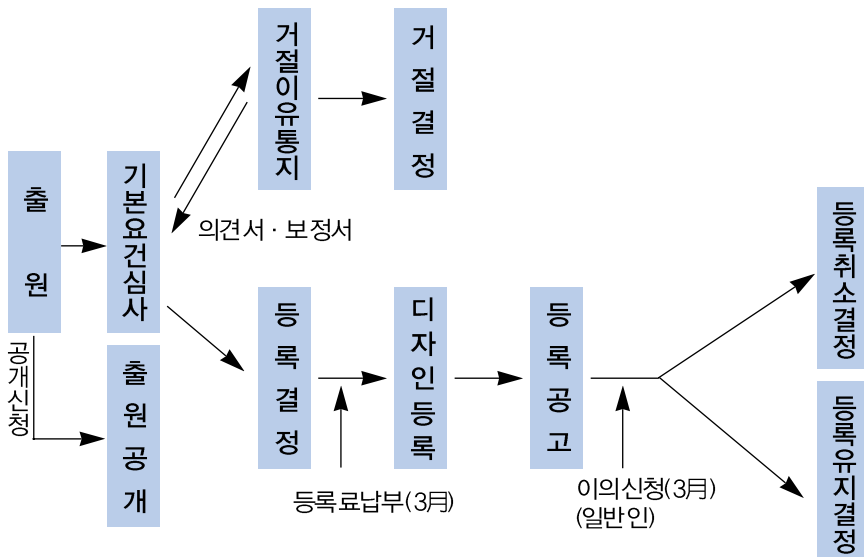
-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및 효력제한 (2005. 7월 이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였음
- 다만, 글자체의 문화발전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 절차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상표

● 상표의 구분

-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Mark)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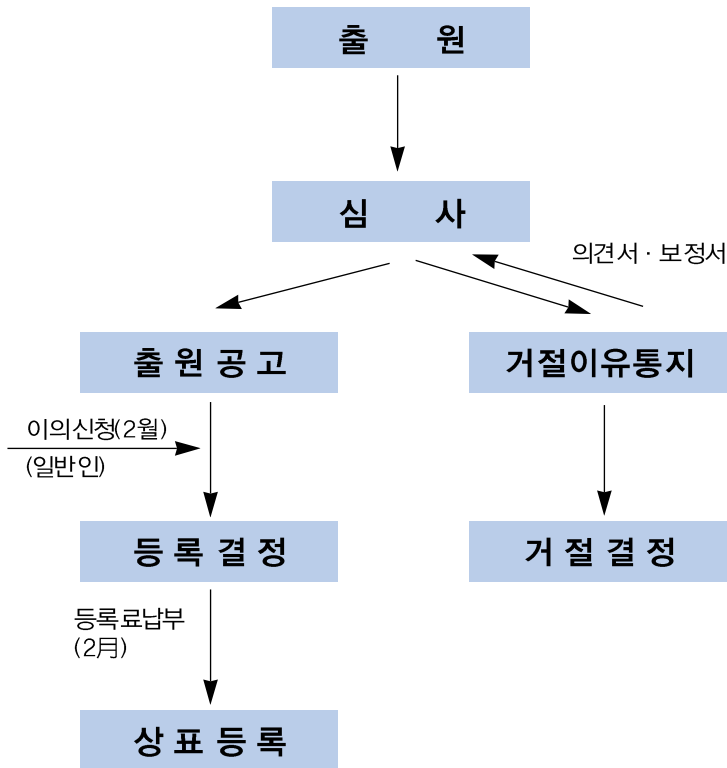
●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 입체상표제도
 -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병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다류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1출원서로 여러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함. 이 기간내 등록출원 하지 아니한 자는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
-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설정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5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 산업재산권 등록의 의의

-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
- 발명 등이 등록결정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에서 등록결정시까지 투입된 모든 노력과 비용이 사라짐

■ 등록신청서류

-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이전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 양도인의 인감날인 및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3,000원)가 첨부된 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회사합병인 경우 합병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공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동의서에 동의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서 또는 허락서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서(동의서에 등록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일정기간내 1권리 1등록 신청 및 수수수 납부

■ 등록신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정기간 경과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의 상이 등
- 변동등록
 - 양도증에 수입인지 미첨부
 - 특허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상이 등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부족납부 및 연차 상이 등
- ※ 2001. 7. 1 개정법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불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 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명기회 부여
- ※ 2006. 7. 1부터는 특허청장이 연차등록료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 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 등록의 효력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 승계는 제외)임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 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설정도 가능함

■ 등록방법

- 특허, 실용신안(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 등록
 - 최초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함. 단, 면제·감면 대상자, 일부청구항(디자인)포기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
 -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내(2배 납부)
 -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일단 소멸되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 추가납부 기간
 - 새로운 연차 시작일로부터 6월 이내(2배 납부)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 2월전까지 우편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예고 안내를 함
- 실용신안 선등록(출원일이 1999. 7. 1 ~ 2006. 9. 30 인 경우)
 - 실용신안 선등록제 실시중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그 이전 출원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



- 최초등록료 납부
 - 최초 1년분 등록료를 출원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단, 이 제도 시행 이전의 출원건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년분 등록료만 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년차분 등록료를 일시에 자진 납부하여야 함 (4년차 등록료부터는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와 동일)
- 상표등록
 -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납부기간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신청 가능. 단, 기간 연장료 납부)
 - 상표등록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음
- ※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갱신출원(9~10년 사이)을 하여야 함
 - 이 기간내에 상표권 갱신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을 할 수 있음(소멸예고 안내함)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함
- ※ 특허료의 보전(補填)제도 (특허법 제81조의 2, 2003. 5. 12 시행)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납부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함
- ※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법 제81조의 3 제3항, 2005. 9. 1 시행)
 -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 ※ 등록세(지방세)와 특허(등록)료 통합징수제도
 - 상표권 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세(지방세)와 특허(등록)료를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07. 1. 1)에 따라 등록세(지방세)와 특허(등록)료의 납부기한이 동일해 짐(등록신청서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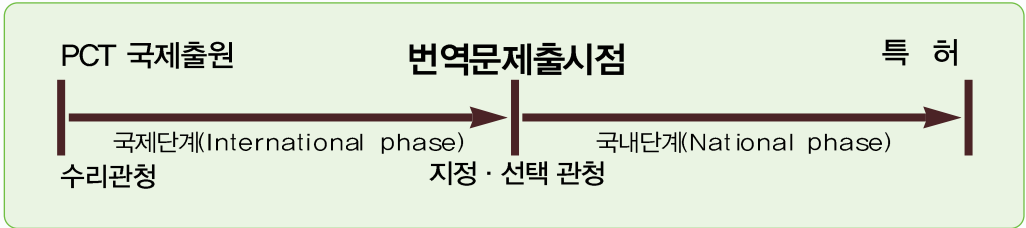
IV. 해외출원 방법



1 PCT 국제출원

■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 ※ 2004. 1. 1 이후의 출원부터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의 제출로서 국제출원일 시점의 모든 PCT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게 됨
- 장 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방지
- 주요용어
 - 수리관청 :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
 - 지정관청 :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선택관청 :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PCT 국제출원 언어
 - 국어, 일어 또는 영어
 - 국어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 PCT 국제출원 절차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제출
 - 출원서 서식(Request Form)배부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팀, 특허청 서울 사무소, 특허청 홈페이지(민원서식), WIPO 홈페이지
 -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
 -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있는 경우), 요약서 : 전자적 형태 제출시 1부, 서면으로 제출시 3부(PCT-EASY에 의한 출원시 FD 1부 추가)
 - ※ 2005. 2. 11 이후 온라인 제출 가능
 - 우선권 증명서류 : 1부
 -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 또는 특허청에 송달신청
 - 국제출원의 시기
 -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도달주의 채택
 - 우편출원시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때를 제출일로 인정하므로 주의 요망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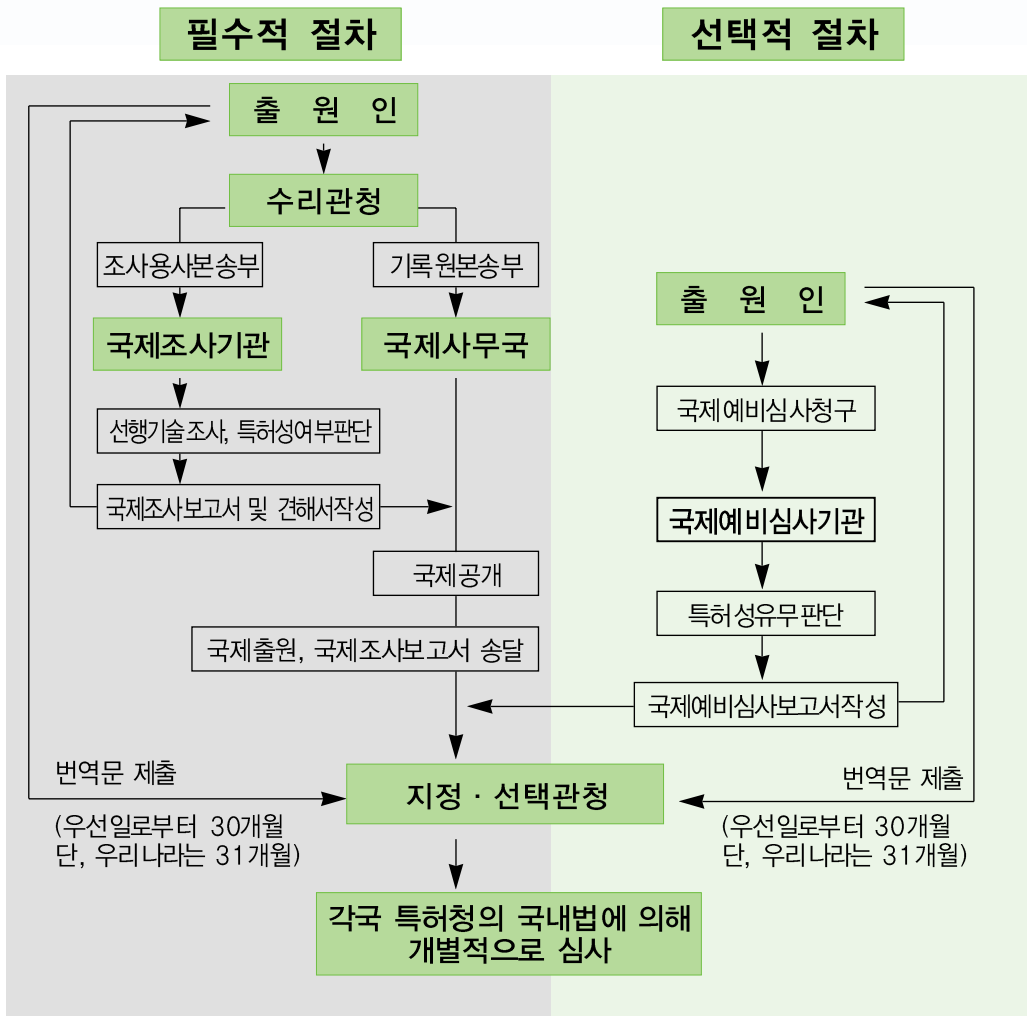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형식
 -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 및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 ※ 국제예비심사청구 기간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은 때까지임 (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특징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하여야 함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진입 기간(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여야 함
 - *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2007. 7. 1 현재)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 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제출기한
 -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단, 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 수수료 납부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 개정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까지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2007. 7. 현재 4개국 :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

■ PCT 국제출원 흐름도차





2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 상표의 국제출원 개요

● 의 의

-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또는 주소지(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특허청(Office of origin)을 통하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제출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을 한 후에 각 지정국가(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에 통지, 각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1년 내지 1년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효과 발생

● 우리나라 시행시기 : 2003. 4. 10

마드리드의정서

- 채택일 : 1989. 6. 27. 발효일 : 1995. 12. 1. 시행일 : 1996. 4. 1.
- 가입국(2007. 7. 16)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74개국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 번역문 없이 다국가에 1출원시스템(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단, 우리나라는 영어만 가능)
- 국내단계 진입시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음
- 각 지정국에 별도의 갱신등록 또는 명의변경등록이 필요 없음(하나의 국제등록부로 일괄관리)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 국제출원절차 일반

- 출원인 적격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자



IV

- 국제출원서의 제출
 - 국제출원서(MM2) 1부를 작성, 첨부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1부를 특허청에 제출
 - 국제출원서(MM2)는 국제사무국에서 정한 공식서식으로 반드시 이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국제출원서(MM2)와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특허청 마드리드홈페이지(www.madrid.go.kr)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작성요령은 동 서식 뒷 부분의 기재요령 참고)
 - 국제출원은 반드시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를 국제출원으로 간주하지 않음
 - 대한민국특허청에 제출하는 국제출원서(MM2)는 영어로만 작성
 - 우선권주장은 해당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기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 등록된 상표등록에 기초하여서만 출원가능하며 이를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 함

● 본국관청 절차

- 출원인은 자국 또는 주소지(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특허청을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라 함
- 본국관청 즉, 특허청에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과 국제출원간의 기재사항 합치여부를 심사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면 그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이 신청을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인정

본 국 관 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청에 계속중인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영어로 작성)을 하는 경우의 특허청

● 국제등록 및 국제공고

-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출원서의 국제출원인 자격요건, 지정국기재의 적정성, 상품분류의 적합성, 명확한 상품기재여부, 수수료납부여부 등에 대해 방식심사



- 방식심사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송부하며 본국관청 및 각 지정관청(Offices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에 통보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한 사항을 공보(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

● 지정국 관청절차

-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영문국제출원서를 송부받아 상표심사를 수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해 주어야 하므로 기간관리가 중요

지정국관청

외국인이 외국특허청을 통하여 제출한 국제출원에서 아국을 지정국으로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한 후, 국제사무국이 특허청에 지정통지를 한 경우의 특허청

●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

- 의의
국제출원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정계약 당사자를 국제출원 후에 지정하여 보호의 영역을 확장(territorial extention)하는 것을 말함
- 유용성
 - 출원인이 국제출원 당시에는 영업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계약당사자가 후에 필요하게 된 경우
 - 국제출원시에는 의정서에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 거절, 무효 또는 포기 등으로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것이 후에 보호가 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유용
- 요건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내에서만 가능
 - 지정국이 의정서 계약당사자(가입발효 확인필요)이어야 함
 - 국제출원의 언어와 상관없이 영어 또는 불어로 통보가능
 -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제출가능
 - 서식은 사후지정신청서(MM4)를 사용
 - 출원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IV

- 사후지정의 효력
 - 사후지정일자 :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사후지정일
 - 지정계약당사자에서의 효력 : 사후지정일로부터 국제등록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국제등록의 변경

-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 국제사무국이 정한 공식서식(MM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 비공식서식(MM10)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편지로도 가능하며 신청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제출
- 감축, 포기, 취소
 - 감축 : 지정계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의 감축을 말하며 공식서식(MM6)을 사용
 - 포기 : 모든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부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보호의 포기를 말하며 공식서식(MM7)을 사용
 - 취소 : 일부 또는 전체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공식서식(MM8)을 사용
 - 감축등록신청은 수수료납부 대상이지만 포기 또는 취소등록신청은 수수료 없음
- 국제등록 명의 변경
 - 국제사무국의 공식서식(MM5)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
- 국제등록부의 경정
 - 국제등록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나 관청의 신청에 따라 경정처리함
 -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문서와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경정



-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문서와 계약당사자(특허청)의 등록원부 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경정신청을 하여야 함

- 국제등록의 갱신

- 권리자는 10년의 보호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국제등록갱신신청(MM11 서식)을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직접제출가능

● 국제등록의 종속 및 독립

- ‘종속성’이란 국제등록의 운명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달려있음을 말함. 즉, 이 5년의 기간동안 또는 그 기간내에 개시된 소송의 결과로서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취소, 포기, 철회, 무효 또는 소멸되거나 기초출원이 최종 거절되거나 취하된 경우 국제등록의 보호도 함께 소멸됨

- ‘중심공격(central attack)’이란 국제등록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종속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그 기초가 되는 하나만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함

- ‘독립성’이란 국제등록이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기초표장으로 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함

- ‘국내 또는 지역출원으로의 전환’이란 종속기간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표장의 소멸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등록이 효력을 가졌던 지정계약당사자에 동일한 표장의 등록을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제반 요건에 맞는 경우 이 전환으로 인한 출원은 본래의 국제등록일에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

- 종속기간 중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은 종속성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등록은 기초표장에 보호 종속될 뿐임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분할이나 병합은 국제등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VI. 특허분쟁시 참고사항

VI

1 특허심판이란 무엇인가?

■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

■ 심판의 종류

●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 취소 결정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3, 상표법 제90조의 2 등),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2, 상표법 제70조의 3)

•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단, 특허 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 청구 불가)

●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 특허 등의 무효심판

• 특허권(상표권 등)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상표권 등)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 등)

- 정정의 무효심판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제137조 제2항)

-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심판청구서 제출처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특허법 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 등)을 구비한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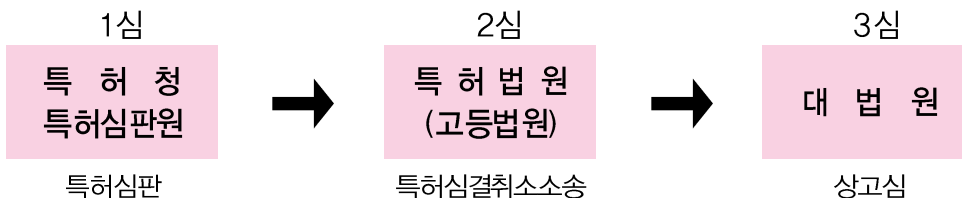
-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결정계 심판 중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의 경우에는 결정등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주소·명의 변경 등의 신고
심판계속 중에 특허권의 이전이 있거나 심판관련인의 명의 또는 주소·명칭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처	사 용 서 식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인 경우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특허권 이전의 경우)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가 아닌 경우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특허분쟁의 해결단계는?

- 특허관련사건(발생, 변경, 소멸 및 권리범위)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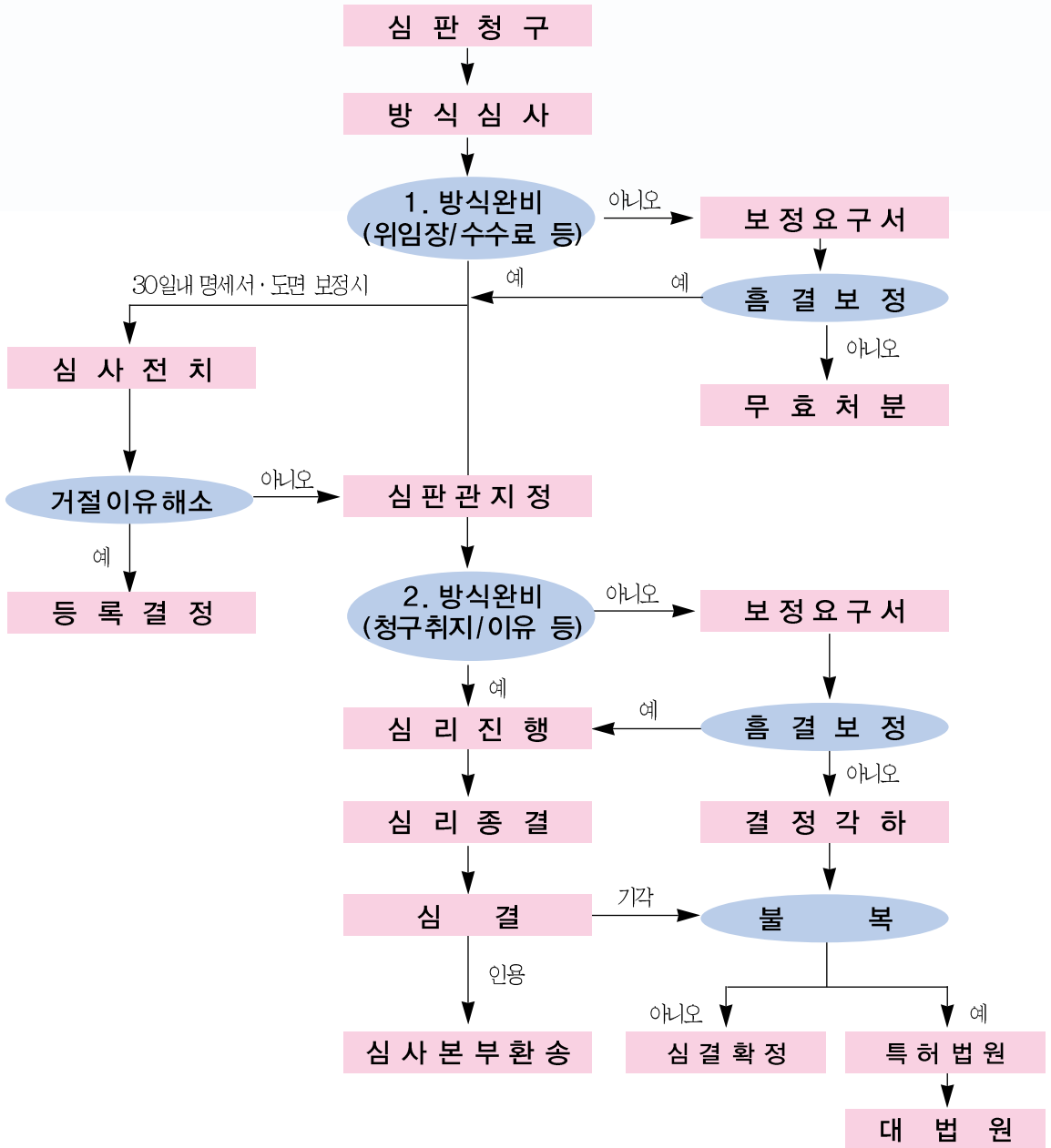


※ 특허관련 침해소송(민사, 형사)은 일반법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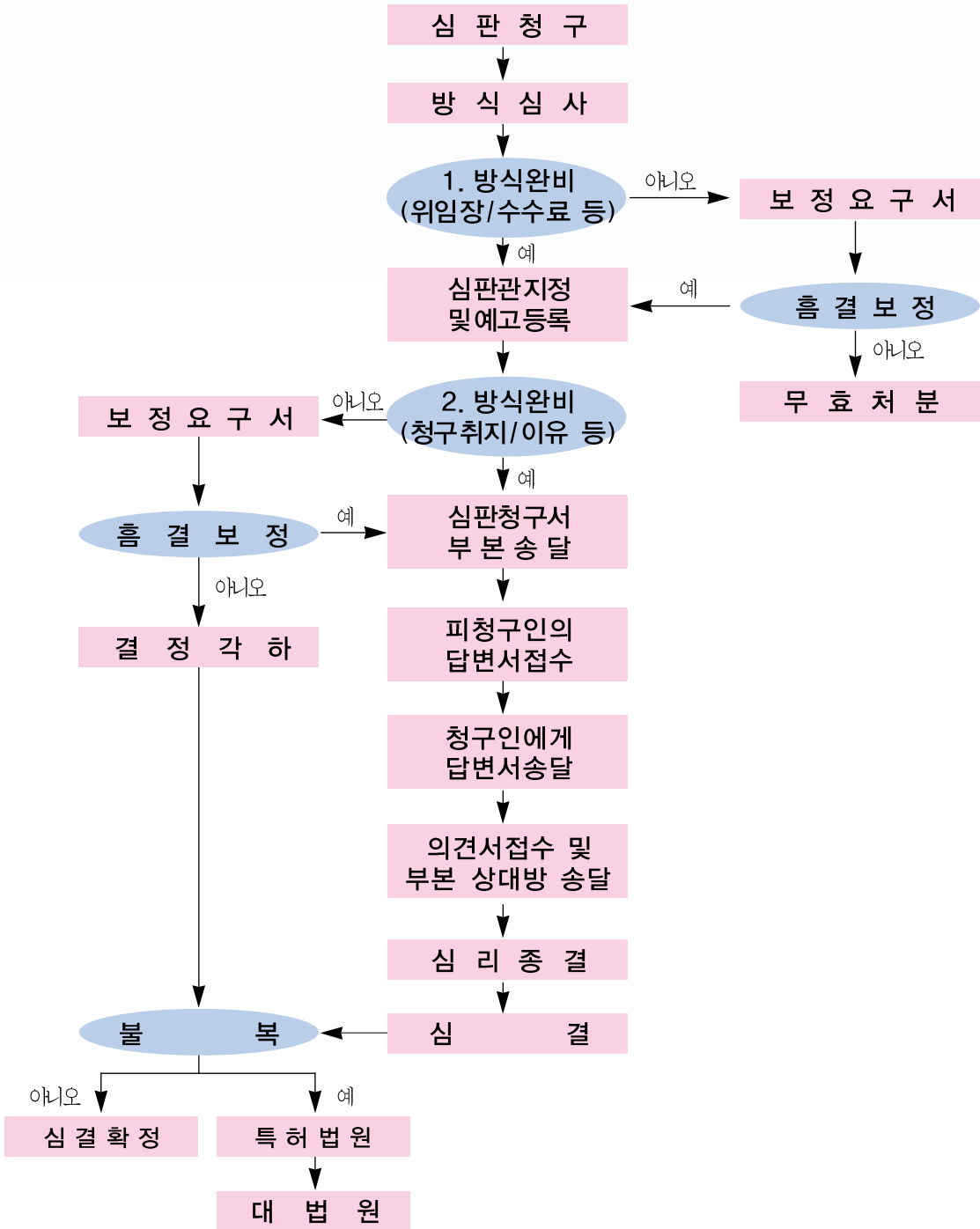
3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 결정계사건(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 당사자계사건



VII.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하여 하는 일

1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운영

■ 취 지

- 전문심사관 및 변리사 등을 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 배치하여 산업재산권 업무에 대해 무료상담 및 자문을 실시함

■ 상담내용

-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출원, 등록 및 심판신청 관련서식 제공 및 작성요령
- 무료변리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재산권 애로 상담

■ 근무시간

- 변리사 상담(서울사무소) : 14:00~17:00(월요일~금요일)
- 민원상담관(특허청, 서울사무소) : 09:00~18:00(월요일~금요일)

2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 설치배경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비 방문 민원상담채널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민원상담 창구로 확대·개편함으로써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

- 전화상담 업무
 - 출원절차(출원서 작성방법 및 절차, 보정서·의견서 작성 등)
 - 등록절차(등록료 납부기간, 이전등록, 실시권 등록 등)
 - 심판절차(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절차 등)
 - 해외출원 절차(PCT·마드리드 국제출원, 국제조약 등)
 - 출원 및 심사진행상황 확인
- 특허기술정보검색 및 활용
 -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및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및 기술정보 활용관련 접수, 파악



- 인터넷 민원 상담 수행 등
 - 인터넷 질의·응답코너를 통한 상담업무의 수행
 - 인터넷에 개진된 민원인의 요구와 의견의 분석,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현장교육 및 현장출동 도우미 운영
 - 출원서 작성 및 전자출원 S/W 사용관련 사용자 교육
 - 전자출원 작성 S/W 사용중 애로사항 해소지원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44-8080(발명발명)으로 전화
- 인터넷 상담
 - 특허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운영
 - * [e kipo.go.kr](http://e.kipo.go.kr) QUICK MENU Q&A(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운영개요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변리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가의 변리비용으로 인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지원

■ 상담인력운영

- 한국지식재산센터(17층)에 상주하여 상담 : 공익변리사 2명
- 지역순회 상담 : 공익변리사 2명
 - 등록변리사가 없는 지역, 상담수요가 많은지역 위주로 일정계획에 따라 순회 상담 실시

■ 상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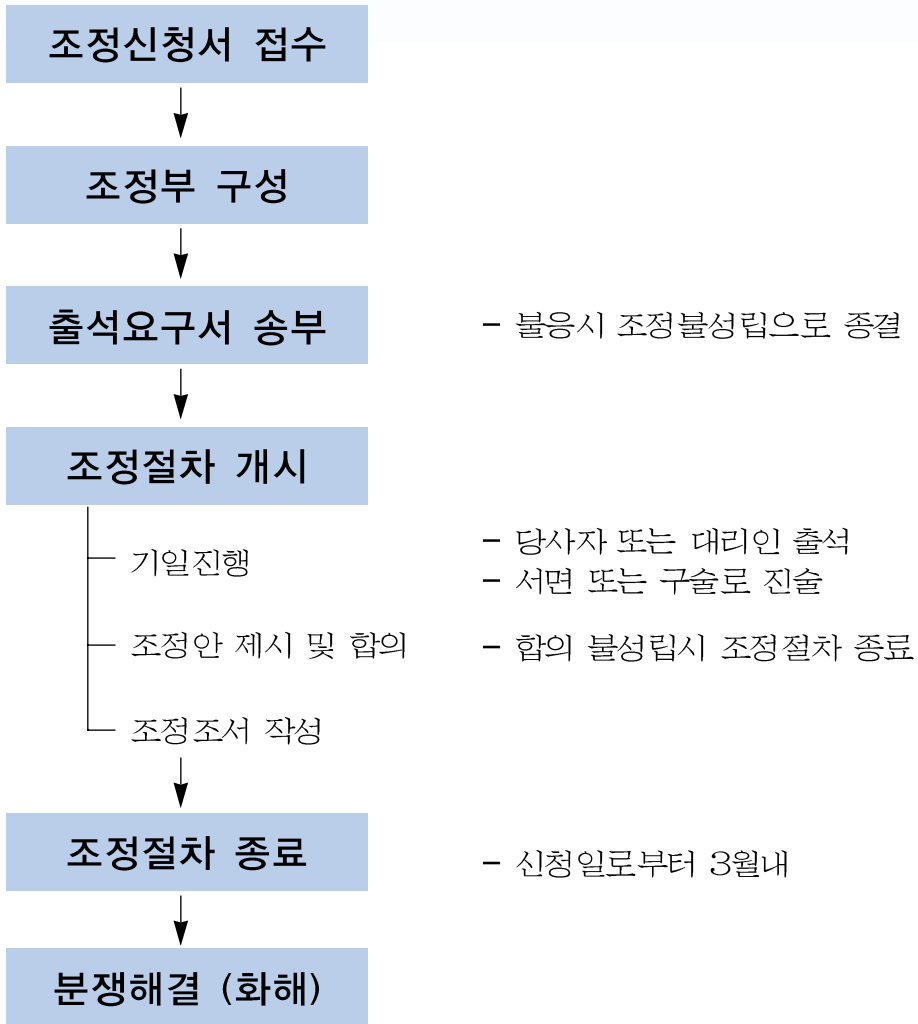
- 선행기술 검색 및 활용
-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순회상담



■ 조정결과

- 조정성립
 -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정불성립
 -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 진행 가능

■ 분쟁조정 흐름도





5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 운영개요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지재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애로상담, 법률자문, 심판 및 소송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

■ 주요 서비스

-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의한 1차 상담 실시
 -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의뢰하여 무료법률상담 실시
- 해외지재권 침해에대한 심판 및 소송비 등의 지원
 - 대상 :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받는 개인 및 중소기업
 - 사업시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지원금액

구 분	지 원 금 액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심판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도 및 홍보 활동
 - 국내 주요도시 및 해외 주요 침해국 순회 보호설명회 개최
 - 주요 지재권 침해발생국의 지재권제도, 구제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가별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발간·배포
 - 인터넷에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지재권 동향, 침해사례 등 주요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상담방법

- 수신자부담 전화 및 팩스 운영 : ☎ 080-567-0001, FAX 042-472-3465
-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상담 접수 : <http://copi.kipo.go.kr>
- e-mail 접수 : copi@kipo.go.kr
- 방문 및 우편접수 :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6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지원, 기술·경영지도, 특허기술 거래·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일괄 지원 실시

■ 사업화지원 대상기술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 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사업화자금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 등 추진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 기술개발이 필요한 특허출원기술
 -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판매 추진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절차

- 과제신청 :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지원기관에 신청서 제출
- 사업화 지원
 - 각 지원기관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지원 실시
 - 사업화 지원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디자인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

※ 신청서류 등 세부적 지원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 ☎ 02-3459-2845~2844~46

* e www.kipa.org



7 우수발명품 시제품 제작지원

등록특허,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제품 제작비용이 부족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시제품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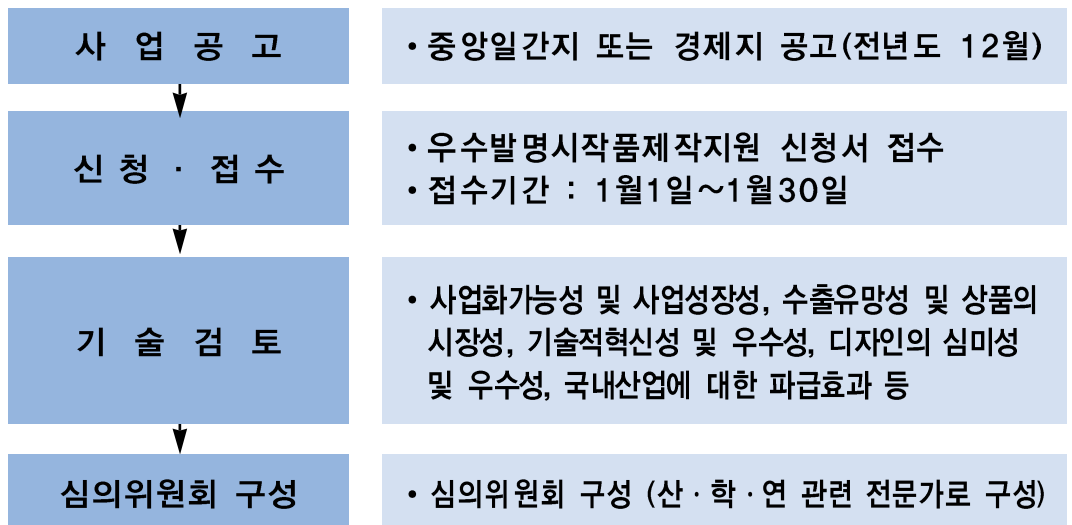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발명(고안, 디자인)을 보유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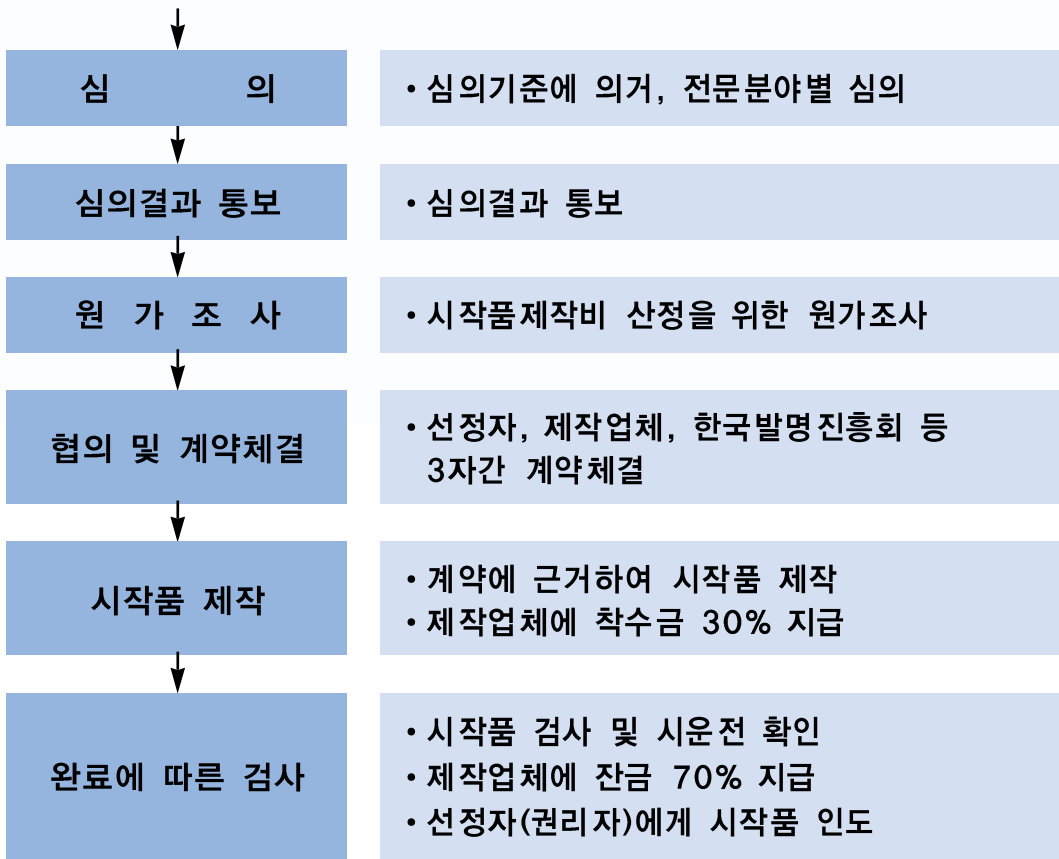
- 국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단, 1999. 7. 1~2006. 9. 30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청의 기술평가서 첨부)
- 당해 권리가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신청일 현재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발명(고안, 디자인) 단, 당해 권리와 관련된 시제품 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제작비 최고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무상지원
-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70% 내지 90% 범위 내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매년 1월초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 전화 : 02-3459-2844
- 팩스 : 02-3459-2819
-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 홈페이지 : www.kipa.org



8 특허기술 평가지원

발명의 평가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공인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3자
 - ※ 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기술은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되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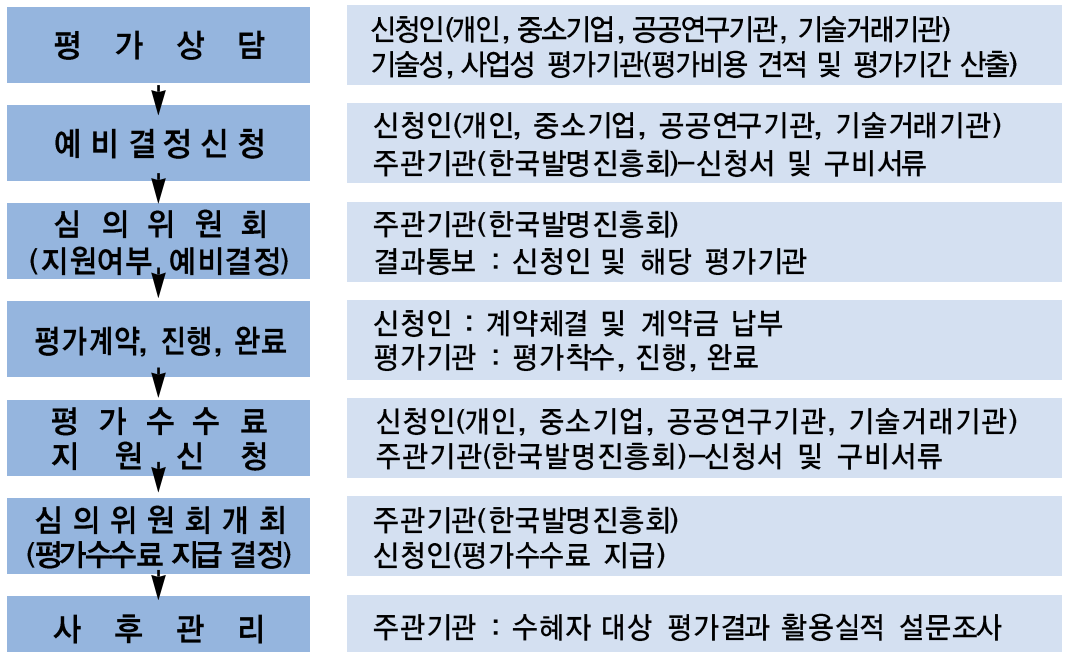
■ 지원자격

- 개인 및 중소기업자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지원내용 및 한도

- 평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의 90% 범위 이내에서 신청인당 연간 총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 지원절차





- 특허청은 평가수행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운영
- 평가신청인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상담을 하고,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사전심)신청을 주관기관에 하며, 예비결정 통보를 받은 후 평가기관과 평가계약을 체결, 계약에 의거 평가수수료를 납부(평가금액 및 기간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름)
-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가 완료되면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인(발명가)에게 평가결과를 회보
- 평가완료 후 평가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관기관에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

■ 평가결과의 활용

-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 과연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음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실시알선시(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수 있음
- 중소기업자로서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35조(시작품제작지원)에 의해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 위한 선정심의시 가점부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특허과제) 선정심의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신청서
-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 ※ 각 발명의 평가기관별 신청양식을 사용 (첨부 : 발명의 평가기관 리스트)

■ 접수기간 : 별도공고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4, 2885, 2890, 2891
- 팩스 : 02-3459-2899
-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 홈페이지 : www.kipa.org/사업안내/특허기술평가팀 참조



■ 발명의 평가기관 리스트

기술성평가기관	전화번호	평가분야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02-3415-8795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산업/일반기계,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세라믹재료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02-2056-4733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중전기, 의료기기, 가정용기기 및 전자용기기, 계측기기,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세라믹재료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2-860-1301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산업/일반기계,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중전기, 의료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H/W, 시스템응용H/W, 응용S/W, 정보기술S/W, 시스템S/W, 통신기기, 통신부품,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세라믹재료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02-2164-0142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요소부품, 조선/해양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의료기기,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섬유제품, 고분자재료,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화학공정, 세라믹재료
사업성평가기관	전화번호	평가분야
기술보증기금	051-460-2539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범위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02-3229-6054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범위
한국기술거래소	02-6009-4387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범위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4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범위
한국산업은행	02-787-6712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범위



9 특허기술 거래시장 개설

■ 사업개요

- 특허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발명가, 기업)과 사고자 하는 사람(기업, 자본가)이 특허기술의 설명, 상담을 통해 기술을 매매 실시하여 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인터넷 특허기술 거래시장 운영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02-3459-2886~2889)

■ 특허기술상설장터

- 특허기술이전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능을 통합 발전시킨 상설화 된 특허기술거래 시장
- 특허기술 및 제품의 전시, 홍보, 교육, 거래알선 등 특허기술의 출원에서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 일괄지원(One-Stop) 기능 수행
-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
- 지원내용
 - 이전대상 특허기술 및 사업화 성공사례 기술 연중 전시
 - 전시대상기술의 전시패널, 리플렛, 동영상 시뮬레이션 및 평가서 지원
 - 전문유통상담관을 통한 특허기술이전 계약 및 협상 지원
 - 연중 투자설명회 개최 및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

특허기술의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기술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에서 특허기술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운영

■ 지원내용

- Cyber상에서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무료로 지원
 - 이전 대상 특허기술 정보제공
 -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특허기술거래에 참여유도
- 구축현황 : 개인,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래대상기술 34,200건, 사업화정보자료 33,000건의 기술이전·거래정보 보유
- 이용절차
 - 회원등록
 - 서비스 이용(IP-Mart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 세부내용 조회 : 홈페이지(www.ipmart.or.kr) → IP-Mart 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97
- 팩스 : 02-3459-2899
-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 홈페이지 : www.ipmart.or.kr

■ 특허기술장터

- 자본가 및 발명자간의 산업재산권 양도, 실시허여 등 특허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거래시장
- 지원내용
 - 이전대상 특허기술의 패널 전시
 - 이전대상 특허기술의 리플릿 및 자료집 배포
 - 특허기술사업화관련 종합적 지원제도 안내

10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

내국인의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 신청대상은 우수기술부문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으로 하며 (사후지원), 핵심기술부문은 송금한 출원비용 또는 국내출원이후 해외출원에정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사후지원 및 사전지원),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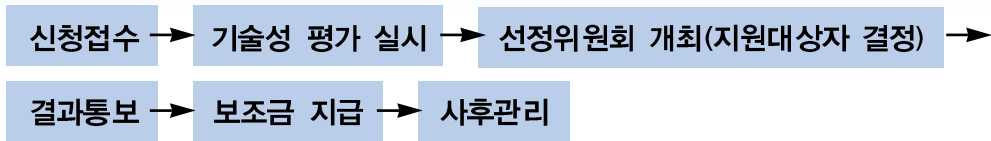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별로 우수기술 300만원(고도기술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핵심기술은 출원국가별로 900만원~1,100만원 범위에서 출원과 등록 비용을 지원(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 개인, 중소기업은 연간 3건이내
 - 대학, 연구기관은 연간 10건이내
 - ※ 해외각국(미국, 중국 등) 특허청에서 발급된 출원번호로 신청건수를 산정함
 -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PCT를 통한 해외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정국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 ※ 핵심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이 가능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선정 심의기준 : 신청인의 자격/ 특허등록의 가능성/ 특허기술의 우수성 / 특허기술의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의함

※ 심의우대사항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 가능

■ 핵심기술 심의기준 : 선정심의회에서 위원 종합심의를 통하여 선정함

1.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2. 특허기술의 기술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3. 시장가치가 높아 국가경쟁력에 기여한 발명 또는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핵심기술 지원대상 기술로 결정하는 경우

- 핵심기술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출원건(국가)별로 900만원 ~ 1,1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서에 의거 매년 11월 30일에 사후정산함
 - ※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록 후 국내외 변리사의 성공보수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건수 한도는 10건 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비에서 해외출원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부예산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불가하며, 정부연구비에서 지출한 국가 이외의 기타국 출원비용에 대하여는 지원가능함

■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기일내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 ※ 온라인 신청을 병행,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을 입력

■ 신청 및 지원기간 : 차수별 공고예정

- 신청기간 : 연간 3차례(3월, 6월, 9월) 접수 예정
- 지원기간 : 5월, 8월, 11월 예정(차수별 보조금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 전화 : 02-3459-2846, 2845
- 팩스 : 02-3459-2858
-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 홈페이지 : www.kipa.org의 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 참조



VIII

특허청 및 유관기관 소개

■ 주요업무내용

- 출원, 등록, 기타 중간서류 접수
- 출원, 등록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실 운영
- 등록원부 및 제증명의 발급
- 국내외 각종 특허공보자료 열람·복사
- 문서송달실 운영

■ 연락처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4~5층
- 대표전화 : (02) 568-8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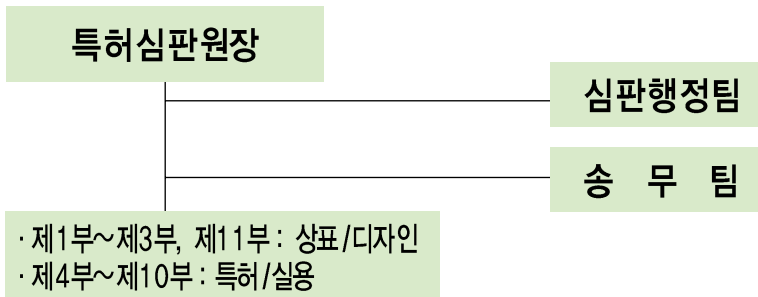
3 특허심판원

■ 설치목적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

■ 특허심판원 구성

특허심판원은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특허심판원장 아래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행정팀과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으로 구성



■ 연락처

- 우) 301-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 대표전화 : (042) 481-4114
-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ipt>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설치목적

특허청 심사·심판관, 기업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내국민 및 아·태지역 등 개도국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저변확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 대처

■ 연락처

우) 305-703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3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대표전화 : (042) 601-4458~9, FAX : (042) 862-5524

*  iipti.kipo.go.kr


5 한국발명진흥회

■ 설치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연락처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표전화 : (02)3459-2800, FAX (02)3459-2999

*  www.kipa.org

6 한국특허정보원

■ 설치목적

- 신속, 정확한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이용 및 산업기술 개발 촉진




■ 특허기술 정보서비스(KIPRIS) 제공

- KIPRIS란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를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학계,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 전문서비스
- 2000. 1월부터 무료서비스

■ 연락처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내 한국특허정보원*

대표전화 : (02)3452-8144, FAX (02)3453-5951

*  www.kipi.or.kr

7 대한변리사회


■ 설치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 연락처

우) 135-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대표전화 : (02) 3486-3486, FAX (02) 3486-3511

*  www.kpaa.or.kr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 발행일 : 2007년 8월
 - 발행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 문 의 : 특허고객 콜센터(전국 1544-8080)
 - 인 쇄 : 금강인쇄정보(☎ 526-0311)
-
-